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05 발의연월일: 2025. 2. 5.

발 의 자:이달희·고동진·김상훈

김소희 • 서천호 • 유용원

김미애 · 김정재 · 김위상

강선영 · 서범수 · 김종양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, 이 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처벌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원회의 구체적인 조치가 법에 명시되지 않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재차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둘 필요도 있어 보임.

이에,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함으로써,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 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6제1항 및 제256조제2 항제4호 등).

## 주요내용

- 가.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하여 명하는 조치의 종류를 정정보도문 게재, 경고 및 경고문 게재, 주의조치알림문 게재, 주의 및 공정보도 준수 촉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(안 제8조의6제1항 각 호 신설).
- 나.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 규정 대상을 정정보도문 게재, 경고 및 경고문 게재, 주의조치알림 문 게재 조치에 한정하도록 함(안 제256조제2항제4호).
- 다.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 문 게재 등 조치의 통보를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(안 제261조제3항 제1호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6제1항 중 "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"를 "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"를 "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"로 한다.

- 1. 정정보도문 게재
- 2. 경고 및 경고문 게재
- 3. 주의조치알림문 게재
- 4. 주의
- 5. 공정보도 준수 촉구

제256조제2항제4호 중 "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"를 "제8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(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 한다. 제261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의 통보를 받은 후에

다시 동일한 사유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의 통 보를 받은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6(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	제8조의6(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
도 등)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	도 등) ①
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	
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	
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	
며,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	
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	
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	
사에 대하여 <u>해당 선거보도의</u>	<u>중앙선거관리위원</u>
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	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한다.	<u>당하는 조치</u> .
<u>&lt;신 설&gt;</u>	1. 정정보도문 게재
<u>&lt;신 설&gt;</u>	2. 경고 및 경고문 게재
<u>&lt;신 설&gt;</u>	3. 주의조치알림문 게재
<u>&lt;신 설&gt;</u>	4. 주의
<u>&lt;신 설&gt;</u>	5. 공정보도 준수 촉구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	③
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	
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	
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	
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	

며,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

#### ④ ~ ⑦ (생 략)

- 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 (생 략)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~ 3. (생략)
  - 4.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
  - ③ ~ ⑤ (생 략)
-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・징수 등)
  - ① · ② (생 략)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<u>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</u>
<u>에 따른 조치</u>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
(현행과 같음)
②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8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3
호까지의 조치(같은 조 제3항
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
지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
를 포함한다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)
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
③

한다.

1.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2. ~ 5. (생 략)

④ ~ ⑫ (생 략)

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의 통보를 받으로 하여 다시 동일한 사유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⑫ (현행과 같음)